

경운대학교 비정년계열전임교원인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자격과 임용절차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구분) ①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하 “비정년교원”이라 한다)이란 임용자와 피임용자간의 계약 임용에 의하여 정년을 보장 받지 못하는 전임교원을 말한다.

② 비정년교원의 근무기간, 처우,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계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직급은 교육 및 연구경력에 따라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며,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과 산학협력을 전담하기 위한 교원으로 구분한다.

제3조(자격) 비정년교원의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및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교원경력, 산업체경력 및 교원경력환산표에 의거하되, 본교 설립이념에 대한 이해와 연구실적 및 교육에 대한 신념과 인격 등을 참작한다.

제4조(의무) ① 비정년교원은 경운대학교에서 계약에 따른 강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학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사행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대학설립이념 구현에 적극 동참하며,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를 이행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협력하며, 학사일정 및 학내 제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③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은 학칙 및 관련규정에 의거 책임학점을 담당하고 전임교원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산학협력을 전담하기 위해 채용된 교원은 책임학점의 30% 감면을 적용하여 책임학점을 담당하고 산학협력 활동에 전념하여야 한다.

⑤ 비정년교원은 교수회의를 비롯한 제반 공식기구나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겸직금지) 비정년교원은 타 기관에 종사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6조(임용절차) 비정년교원의 임용절차는 「경운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며,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이나 특별채용 방법에 의하며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7조(임용계약기간 및 재임용) ①비정년계열 교원의 임용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재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따로 정한다.<개정 2020.03.01.>

② 비정년계열 교원의 재임용심사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로 이원화하여 심사한다.

<신설 2020.03.01.>

③ 비정년계열 교원이 업적 부족으로 재임용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속 부서장

(단과대학장) 또는 학과(부) 소속 정년계열 전임교원 전원의 동의서가 있을 경우, 유예할 수 있으며, 재임용 심사기준 최근 3회 누적 6년간의 총 임용유예 횟수는 2회까지만 승인한다. 다만, 학과(부)소속의 정년계열전임교원이 5인이상일 경우에는 학과(부)장이 지정하는 5인만으로 정성적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 정년계열전임교원이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단과대학장)은 정성적평가위원에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20.03.01.>

제8조(신분보장) ① 비정년교원은 임용기간 중 정년계열 전임교원에 준하는 책임과 신분을 보유한다.

② 비정년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송선학원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용기간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 전공, 학부(과) 또는 기관이 폐지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보수 및 처우) 비정년교원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보수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하여 보수를 책정한다.

제10조(퇴직 및 임용계약 해지) ① 임용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사실을 결정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임용계약기간 종료일에 자동 퇴직된다.

② 해당 교과목 또는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과원 또는 폐직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관련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임용계약기간 중이라도 직무를 태만하거나 대학교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 할 때에는 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임용계약)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소속 및 직위
2. 임용계약기간
3. 보수(급여내역)
4. 복무내용 및 책임학점
5. 기타 필요한 계약사항

제12조(업적평가) ① 비정년계열 교원은 계약기간 중 「경운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거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 및 산학 업적을 토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량적 업적평가를 시행한다.< 개정 2020.03.01.>

1.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 : 교육업적, 봉사업적 및 연구업적 평가 내용에 의함
2.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교원 : 교육과 산학 업적만으로 평가할 수 있음

② 비정년계열 교원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소속 부서장(단과대학장) 또는, 학과(부) 소속 정년계열 전임교원 전원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평가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학과(부)소속의 정년계열전임교원이 5인이상일 경우에는 학과(부)장이 지정하는 5인만으로 정성적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 정년계열전임교원이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단과대학장)은 정성적평가위원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01.>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법령, 「송선학원 정관」 및 「경운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3.0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0학년도 2학기 재임용 심사대상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12조 제2항관련)

<신설 2020.03.01.>

비정년계열 교원 재임용(재계약) 평정표

- 소속 부서장(단과대학장), 학과장, 정년계열전임교원 -

피평정자	성 명						
	소 속		직 위				
	심사 대상 기간						
구 분	평가 항목		평 점				
평 가 항 목	행정 협조		10	8	6	4	2
	학교행사와 회의 참석		10	8	6	4	2
	수업 개선 노력		10	8	6	4	2
	학생지도 참여		10	8	6	4	2
	동료와의 인화 관계		10	8	6	4	2
	기 타		10	8	6	4	2
합 계							
평정자의 종합 의견 :							
평정자	202 년 월 일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